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정비〉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256호, 제2217259호, 제221726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개요	1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4
----------------	---

1. 총괄 검토	4
2. 개별 법률안 검토	10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0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4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20

I. 개 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 (2) 제안연월일 : 2026. 3. 5.
- (3) 회부연월일 : 2025.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5.

(3) 회부연월일 : 2025.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5.

(3) 회부연월일 : 2025.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II.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공제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공제를 말함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가 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있음.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도입 배경에는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1971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1993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1994년) 등 안전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광범위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 주요 사례들이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주요 재난안전의무보험 도입 사례]

연도	대규모 사고	피해 현황	관련 법률(의무보험명)
'71년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사망 163명, 부상 63명	「화재보험법」(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93년	서해 웨리호 침몰	사망 292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망 12명, 부상 101명	「도시가스사업법」(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사망 5명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자료 : 행정안전부)

현재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의 종류는 총 20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65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2026. 8.10. 기준)]

연 번	기관명	보험종목	비고	연 번	기관명	보험종목	비고
1	경찰청	운전학원 종합보험		34	산업부	산업융합규제특례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2	과기부	연구개발 규제샌드박스보험		35		분산에너지사업자 배상책임보험	
3		연구실 안전공제		36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보험	
4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피해 보상보험		37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5	우주청	정보통신융합 규제샌드박스보험		38	식약처	공유주방사고 배상책임보험	
6		우주손해 배상책임보험	●	39		의료기기 책임보험	
7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	40	성평등 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8		학원 배상책임보험		41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9		대안교육기관안전사고 보상보험공제		42		청소년활동시설 배상책임보험	
10	국토부	궤도운송사고 배상책임보험		43	원안위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	●
11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보험		4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보험	
12		도심항공교통 책임보험		45	기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연 번	기관명	보험종목	비고	연 번	기관명	보험종목	비고
13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46	에너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설비 배상책임보험	
14		기계식주차장사고 배상책임보험	★	47		수렵 배상책임보험	
15		항공보험(대형항공)	●	48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
16		항공보험(경량항공)	★	49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보험	
17		항공보험(초경량)	★	50	해경청	수상구조사고육기관보험	
18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책임보험		51		수상레저 종합보험	
19	금융위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52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20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	53	해수부	낚시터 배상책임보험	
21	농식품부	맹견 배상책임보험		54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22		승마시설피해 손해보험		55		마리나사업자 배상책임보험	
23	문체부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56		선원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
24		테마파크업 배상책임보험		57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25		생활체육 안전보험		58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26		지정스포츠클럽보험		59		선주 배상책임보험	
27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60		해양특수경비원무기사용 손해보험	●
28		운동경기대회 배상책임보험		61	행안부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29	복지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62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배상책임보험	
30		기부식품등취식사용피해 손해보험		63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31		외국인환자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	64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32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공제		65		재난배상책임보험	★
33	소방청	다중이용시설화재 배상책임보험	★			이하여백	

(자료 : 행정안전부)

※ 비고란의 '★'은 법령기준을 충족하는 보험(9종), '●'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보험(6종)

다만, 총 65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보험은 9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제1항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 것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2~2023년에 걸쳐 법령 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난안전의무보험보험을 대상으로 ① 보상 한도 설정, ②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마련, ③ 미가입자 제재 체계 마련, ④ 보험사업자의 계약 체결 거부 제한, ⑤ 보험금청구권 압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총 47종의 보험에서 법령 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108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맥락에서 각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 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별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관리주체가 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제한 ■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도선 사업자의 보험 가입 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 제한 ■ 보험 미가입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벌금·과태료 규정 도입 ■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 제한 ■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다만, 부칙에서 각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12월 2일 개정되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항공사업법」(법률 제21189호)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한 종류인 항공보험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보험금지 급청구권 등의 양도·압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²⁾, 위와 같은 내용의 부칙을 함께 두고 있음³⁾.

이하에서는 각 개정안별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 2)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2.>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2.>
- 3) 「항공사업법」 부칙<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제2조(보험·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별 법률안 검토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0조제3항 신설),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보험 가입) ①·② (생략)	제30조(보험 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u>
<u><신설></u>	<u>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u>
제82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⑤ (생략)	9. 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승강기사고보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 등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임⁵⁾.

[승강기사고보상책임보험 개요]

구분	내용
보험 가입 의무자	승강기 관리주체
가입 시기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보상 한도	사망 : 1인당 8천만원 / 재산피해 : 사고당 1천만원 등
미가입 시 과태료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400만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중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제한(제76조의2제1항제4호)과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같은 항 제6호)를 충족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76조의2제1항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가입 요청의 거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내용과 「재난안전법」 상 기준의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법」 제76조의2제1항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승강기 관리주체가 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제4호)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 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 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제한	■ (제6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또한,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과 관련하여,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입법례를 참조할 때,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 이하부터 2천만원 이하까지 상이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참고 입법례]

(300만원 이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0만원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1천만원 이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환경책임보험
제18조(보험자)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2천만원 이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등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이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안 제33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보험금 지급청구권 등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제한하며(안 제33조제4항 신설),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바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9호 삭제 및 제41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예의 가입 10. (생략)	제27조(개선명령 등) ----- ----- ----- -----.
제33조(보험 등예의 가입)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3조(보험 등예의 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 설></u> ② (생략)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u> <u>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제41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제43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u> ② (현행과 같음)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은 유선 및 도선의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유·도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임⁶⁾.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개요]

구 분	내 용
보험 가입 의무자	유·도선사업자
가입 시기	사업 개시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상 한도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 재산피해 : 사고당 1천만원 등 *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3조제1항에 따름
미가입 시 제재	행정처분 : 면허 취소·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 벌칙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 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중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제한(제76조의2제1항제4호),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같은 항 제6호), 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제재 마련(같은 항 제3호)을 충족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76조의2제1항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가입 요청의 거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의 내용과 「재난안전법」 상 기준의 대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법」 제76조의2제1항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도선 사업자의 보험 가입 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 ■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제4호)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 제한	■ (제6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보험 미가입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개선 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벌금 규정 명시	■ (제3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보험 미가입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선명령⁷⁾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⁸⁾과 벌칙⁹⁾을 제재 수단으로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서의 가입

10. (생략)

활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삭제하고, 곧바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법	개 정 안
개선명령 선행 여부	○	X
행정처분	면허 취소·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X
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과 같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험 미가입 유·도선사업자에게 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과 달리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라는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측면에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이하 생략)

-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한다면, 현행법과 같은 개선명령 체계를 유지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보험 미가입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21조 제3항 및 제31조제2항제5호 신설),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험가입)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1조(보험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 부한 보험회사 ③ · ④ (현행과 같음)

어린이놀이기구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시설 관리주체¹⁰⁾ 및 안전검사기관¹¹⁾이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임¹²⁾.

[어린이놀이기구시설배상책임보험 개요]

구분	내용
보험 가입 의무자	어린이놀이기구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가입 시기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기관 : 기관 지정 후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 한도	사망 : 1인당 1억원 / 재산피해 : 사고당 250만원 등
미가입 시 과태료	1차 위반(250만원), 2차 위반(35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10)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11)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2)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중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제한(제76조의2제1항제4호)과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같은 항 제6호)를 충족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76조의2제1항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가입 요청의 거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내용과 「재난안전법」 상 기준의 대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법」 제76조의2제1항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보험 가입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제4호)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 제한	■ (제6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또한, 앞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같이,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에 관한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입법례를 참조할 때,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 이하부터 2천만원 이하까지 상이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